

온열질환

예방 지침 및 자율점검








목적

-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'온열질환예방지침' 및 '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'를 활용하여, 온열질환에 대한 어업인 자체 예방대책 수립 지원
- 외국인 선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를 위한 다국어 자료 제공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온도계, 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5대 기본수칙 준수 *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]으로 명문화

5대 기본수칙 준수

 <p>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 <p>바람·그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내·옥외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 <p>휴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(쉼터) 설치 체감온도 31°C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°C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 <p>보냉장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 <p>응급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*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

폭염 시 행동요령

- 어선안전국 기상방송, 조업정보알리미를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 수시로 확인
- 충분한 수분섭취 및 녹차, 커피 등 카페인 섭취 자제
- 오후2시~5시 조업자제
- 더위를 피해 가능한 자주 휴식시간 갖기
-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 및 휴식 시 고무장화 탈의
- 작업 시 열사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단 및 구조요청
- 외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현장에 비치하여 외국인 선원 대응력 제고 권장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

1. (물)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

○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

적정 개선 필요

2. (바람·그늘) 실내·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

○ 실내·옥외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

적정 개선 필요

○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
적정 개선 필요

3. (휴식) 주기적으로 쉬기

○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(쉼터) 설치,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, 시원한 물 비치

적정 개선 필요

○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

적정 개선 필요

○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
적정 개선 필요

4. (보냉장구) 근로자 체온 낮추기

○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
적정 개선 필요

5. (응급조치) 119/관할 해경에 신고하기

○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

적정 개선 필요

○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적정 개선 필요

6. 그 외 예방조치

○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습도계 비치

적정 개선 필요

○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, 응급조치 요령 교육

적정 개선 필요

○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·보관

적정 개선 필요

○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
*신규배치자,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, 고령자 등

적정 개선 필요